

# 종 합 토 론

## ● 강인재(사회자, 전북대 교수)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에 강인재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방정부 자산실사의 성과와 과제인데 저는 사실 몇 가지 감회가 뜻 깊습니다.

첫째는 작년까지 저희 논문의 제목이 과제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 논문에 대한 성과가 있고 과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좋은 점을 평가해가지고 앞으로 이걸 토대로 과제를 하자.

두 번째는 저희가 복식부기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공무원의 회계교육문제이고, 두 번째가 자산실사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전중열 교수님께서 좋은 테마를 가지고 발표하시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자이신 전중열 서울산업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3분인데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초창기부터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실무자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재정경제부에 조영욱 사무관님과 대전직할사에서 오신 이재화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분 토론자께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중열(서울산업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대학의 전중열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회계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헌 회계사님이 주로 담당을 하셨고 제가 옆에서 보완하는 식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기초자산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 부분에서는 자산 중에서도 특별히 회계에 있어서 재무회계관점에서의 유형자산, 또 이미 우리가 예산회계적인 차원에서의 재산과의 차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방회계기준 부칙 제1조에 의하면 200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시재무제표, 다시 얘기해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상태보고서라는 건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순자산이라는 건 다른 아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서로 등장함에 따라서 또한 이러한 시설들의 다양성, 또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인해서 자산실사에 대한 내역이 주로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귀약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초자산실사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표1을 보시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4차에 시험운영기관을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이미 시행된 부분도 있고 현재 막바지 작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1차는 99년도부터 시작해서 부천시와 강남구에서 시범운영기관으로 하다가 이제 4차로 넘어와서 전체적인 250개 지자체에 대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개시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행자부에서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해서 보면 2005년도 말 기준으로 하여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또 2006년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회계적인 거래라든지 사건에 대한 처리를 바탕으로 한 결산을 업데이트하는, 다시 얘기한다면 2005년 말 기준에 자산부채에 기초가액에다 2006년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내역을 결산하고 그럼으로써 2006년도 재무회계 결산과 개시재무제표가 확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회계기준에 명시가 돼 있는 자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일단 자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회계기준 제11조에 의하면 자산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느냐 하면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여기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공공서비스 잠재력, 경제적 효익창출” 이런 두 가지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방회계기준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산은 공공서비스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라는 자산의 인식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그런 사실과 또 그것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의 관점이 되는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역시 지방회계기준 제4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해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등등 이런 것에 의한 것은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에 취득원가로 한다.”그래서 대원칙은 취득원가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방회계기준에서 정의가 돼 있는 자산, 인식기준, 또 평가기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초자산 가액을 결정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자산의 분류를 보면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업회계기준에 있는 대차대조표의 큰 틀을 따라서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유형자산이라든지 이것은 유형자산을 둘로 나눠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에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또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이것은 정부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이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비유동자산으로 속해 있는 무형자산이 하나의 항목으로 기업회계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형자산이 갖고 있는 부분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맨 아래 칸에 있는 기타비유동자산에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를 해놓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3에 의하면 이러한 기초자산에 항목별로 실사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현행자료를 활용해서 실사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항목으로서는 공유재산이라든지 물품,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실사하는 방안으로는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과소, 읍면동에서 공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 조사하는 그러한 실사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서면조사에 의한 실사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유동자산이라든지 투자자산 등에 해당이 되겠고, 현행 세입세출결산서라든지 부서별 보관자료를 기초로 해서 서면조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실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든지 문화재 등등 이러한 것들은 현황은 파악하되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조사하는, 그렇지만 이것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초자산의 실사방안 중에서 제일 현재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현행 자료를 활용해서 실사한 항목, 그거에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이라든지 물품 등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이 논문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림2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행 자료를 활용해서 실사항목을 처리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현행 보유자료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사 서식에 맞게 정리한 후에 관리부서에서 실사를 하고 또한 거기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를 기록하고 실사내역을 취합하고 그런 다음에 현행 자료와 실사간의 차이분석을 하는 그러한 처리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회계기준에서 나와 있듯이 취득원가를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평가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평가방법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 같은 경우에 취득원가의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는 이러한 대체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본다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은 하나의 단일한 어떤 자산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개의 유형자산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복합자산의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기반시설, 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 위 아스팔트 부분이 있고 도로 밑에 토지부분이 있고 또 그러한 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것들이 각각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돼서 같이 복합적으로 모여지는 식으로 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 보면 업무처리매뉴얼에 의하면 유동자산, 또 몇 가지 추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일단은 기초실사단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어떤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아예 제외되는 것으로 실사단계에서 오인되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의 경우 현행 재산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자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말씀드린 복합자산의 경우에는 시설과 토지와 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사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토지하고 시설하고의 관련성을 100% 맞춰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자산의 토지고 일반유형 자산의 토지에 포함되는 경우도 왕왕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논문에서 보고자하는 공유자산과 물품에 관련돼서 일단 정해진 정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유재산은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공용, 공공용, 기업용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물품은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행 알고 있는 재산과 회계상 자산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무회계상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재산에다가 발상주의항목 자산(선급비용 등)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등으로 이런 것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의 현황 파악에 어

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은 재무회계 관점에서는 취득원가주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원가주의라는 것은 구입원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산을 실사하는 단계에서 구입가격은 예전 장부에 어떤 자료가 있다면 쉽게 용이하게 찾아낼 수가 관련된 어떤 부대비용,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에서 보상을 한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그렇게 쉽게 구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차이점을 보면 우리가 재무회계관점에서의 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검사 혹은 검수시점에서 이루어진 데 반해 재산은 공부상의 등재시점, 그러한 약간의 시점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논문에서는 일단 세 가지 자치단체를 사례로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재무회계상의 자산과 그 다음 지금까지 현행 해오던 재산간에 액수가액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관련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자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역자치단체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A하고 C인데 B는 자치구에서 하나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군에 속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산과 재산을 비슷한 입장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라든지 무체재산권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경우 입목과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장치는 비품, 차량에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의 사회기반시설 즉 복합자산에 속하는 비품과 차량운반구는 시설물에 포함해서 재분류를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맨 왼쪽에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크게 가운데로 나뉘서 발생주의회계, 이게 지금 얘기하는 재무회계관점에서의 유형자산 이것을 A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또 우편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유입회계에 있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분류의 원칙에 따라서 3가지 지자체에 대한 내역이 세분화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표5에 보시면 A에서 즉 발생주의회계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주의 공유재산 물품을 빼는 식으로 표시한 것이 그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실 때 전체적인 차이 왼쪽편에 있는 A-B로 나와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나의 샘플이겠지만 발생주의회계 상의 자산이 광역A하고 기초C에서 재산 상의 공유자산 더하기 물품액보다 가액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기초B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토지라든지 시설물, 혹은 비품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표하고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발생주의회계에 있어서의 자산 가액이 재산보다 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역A와 기초B의 경우에는 토지 부분에 보시면 발생주의상에 있어서 토지가액이 현금주의 토지가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가 발견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사과정에 있어서 토지가 누락돼 있다든지 아니면 취득 원가를 밝히기 어려울 경우에 대체가액으로 평가해서 아까 얘기한 보상비 같은 것을 취득부대비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설물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하에서 시설물 가액이 상당히 현금주의 시설물가액보다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이유로서는 주민편의시설에 속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사회기반 시설에 속하는 도로가 발생주의회계 상에서 계상할 때 포함된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기초자치단체의 B와 C의 경우에 있어서 발생주의 하에서 비품, 차량가액이 현금주의 하에 비품, 차량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 하에서의 물품현재액 보고서 상에서는 정수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비정수과목은 불포함 되었던 것들이 발생주의 하에서 계상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A의 경우에 있어서 발생주의 하에서의 비품, 차량이 현금주의 하에서의 비품, 차량보다 오히려 적은 그런 결과가 발견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물품이 발생주의회계에서 시설자산으로 분류되었거나 혹은 물



품 현황이 누락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3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주의 하에서의 자산가액과 현금주의 하에서는 재산가액이 틀려지는 원인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이 어떤 하나의 실사과정상에 문제이겠느냐, 혹은 이것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또 다른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현행 보유 현황 자료를 통해서 실제 조사하는 그런 항목들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것에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실과소를 예비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것에 어떤 대체적인 현황이 어떤지를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사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에 대한 본 조사를 실시하는 이러한 부분적인 단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예비조사의 성격이 많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재산과 자산의 가액을 비교해서 항상 적정성을 검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봤듯이 그냥 발생주의 하에서 자산가액과 또 현금주의 하에서의 어떤 재산가액이 그냥 숫자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가 반드시 이해되어야 기초자산에서 나와 있는 가액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차이의 원인에 대한 조사, 저희들이 아까 사례의 경우에는 상당히 추측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닐까, 혹은 저것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원인에 대한 명세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산과 재산간에 차이분석 명세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명세서로써 자리를 잡아야 그것의 정보를 이용하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점들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하나의 단순한 사례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기초자산 전체에 대한 혹은 자산뿐 아니고 부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분석에서는 상당히 검토차원에서는 미달이지만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현금주의회계에서의 그 재산을 결과적으로는 발생주의 하에 자산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적정성의 검토의 문제라든지 혹은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

는 그러한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점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 이병철(경기대 교수)

경기대학교 이병철입니다.

전중열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내용이 한 12페이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 무주학회 때 그냥 구두로만 토론을 하다보니까 플로어에서 제가 말씀드린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고 제가 또 그 답변을 못 드렸고,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목이 지금 지방정부 자산실사의 성과와 과제인데 사실 이 논문자체에서는 지금 자산실사의 성과에 대한 얘기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산실사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과제가, 이런 것이 해결해야 된다. 아마 여기 지자체에서 오신 많은 공무원분들이 자산실사의 과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끊어주는 내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논문을 보면서 그동안 간파하고 제가 행자부 정부회계심의위원을 그만둔 지 1년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바뀐지 몰랐는데 “회계실체의 소유하고 이들 자산 일정계약 ...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와 보유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국어사전적으로는 사실 소유나 보유나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유를 두 번씩이나 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아마 보유는 점유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냐, 만약에 소유 또는 사용이라고 하면 2배가 병렬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들 자산이 일정기간 점유성 사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점유하지 않는 그러한 자산은 그러면, 점유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산,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임대를 맡겼다가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짓자마자 일정기간도 아닌 일부 매장을 외부에 임대를 줬다면 그 부분은 정부의 자산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산에 대한 정의를 2~3년 전에 안을 드렸을 때는 거기에서

이 점유라는 개념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얘기인데 아마 그때 제 보고서를 제대로 한번만 보셨다면 이런 오류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검수 때부터 일정기간이라는 얘기가 1초나 1시간이나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보유의 뜻 차이가 없다는 것과 자산실사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개념정의가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다 보면 실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계상 불가능한 사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논문에서는 사실 조금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논문 표2에 자산의 분류에 보면 이것은 2004년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유동자산에 보면 첫 번째 줄 회계과목에 결산처분충당금인데 이건 대손충당으로 바뀐 지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밑에 내용들을 보면 미수전입금, 미수지방교부세 이런 것은 유동자산에 한 단계 더 내려간 개념으로 바뀌었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옛날 것을 그냥 썼다는 것이 아쉽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유산자산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자산이 자산으로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그게 없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옛날 자료를 기준으로 논문을 쓰셨다면 내용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6페이지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이 유동자산 등에 대해서도 실사나 평가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 교수님 논문에도 그렇게 쓰셨는데 저도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왜 빠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빠지면 실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사실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냥 2006년도 마지막에 가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큰 착각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만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준이 뭐냐, 이것에 대한 실사기준 없이 시험 적용이 진짜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2006년도 중에 시험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기초가액이 없이 실사가 되겠느냐, 한번 제가 객관식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계시니까, 결산액 현재 2005년도 12월 31일도 좋고 2006년도 12월 31일도 좋습니다.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얼마를 계상하시겠습니까?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2번이 맞다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나머지 손 안 드신 분은 어떤 의견이시죠?

1번은 12월 31일 현재 금고시제로 할 것이냐, 결산액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번은 12월 31일 금고시제액에다 납세자의 납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납부를 은행에서 했지만 그것이 시 금고나 구 금고에 들어올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세자가 납부한 것을 현금 재무제표에다 계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신가요? 2번 손들어보세요. 1번 손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2번으로 하게 되면 미수세금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번도 2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출납폐쇄기간이 문제입니다. 출납폐쇄기간 동안 왜 저는 이 출납폐쇄기간 동안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회계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왜 그 기간 중간에 지출액을 전년도에 반영하도록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발생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출납폐쇄기간 중에 지출액은 차감하도록 운영보고서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상태보고서에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납폐쇄기간 중에 지출액만 넣을거나, 수납액은 안 넣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12월 31일날 현재 잔액이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시험운동을 하고 그 다음 2006년 12월 31일날 결산한 그 현금액은 맞다고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과제로 얘기가 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자체에 실사도 하고 개시재무제표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침에는 아무 것도 없다면 현장에서는 다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지난번 무주 학회 때도 이호 박사님께서 발생주의회계 재무제표상에서의 어떤 재무비율과 과거에 연금주의 상태에서의 재무비율을 비교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재무비율 비교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비교대상이 아닌 것이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만약 이 출납폐쇄기간 중에 지출액만 차감을 한다면 운영보고서와 재정상태보고서 상에 어떤 차액 조정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손충당금이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금액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조금 차이인데 그냥 중요성 원칙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성의 문제이지 중요성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많은 검토사항과 대안이 지금 실무에서 요구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없이 과연 전국이 표준화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실사해서 개시재무제표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각양각색 다른 기준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복합자산의 경우 동사무소 건물인데 주민편의시설이 3분의 2나 절반을 사용하고 있어요. 50대 50이라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 지하실에 보일러, 또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입목 같은 경우, 교목이나 관상수는 어떻게 장부상에 올렸다고 합시다. 철쭉을 하나에 2천원짜리 10만본을 심었어요. 가정해서 1천만원어치 된다고 합시다. 큰 금액으로 올릴 만도 할 것 같은데 개당 금액이 2천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금년 봄에 워낙 추워서 절반이 얼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에서 금액을 차감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유형자산에서 차감해야 됩니까? 어떤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실무상에서 선택해서 하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주민편의시설에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지자체간 평가할 때 그게 여러분들 지자체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많기 때문에 판단하실 때는 우리 지자체가 나중에 성과평가 받을 때 지자체간 비교평가 받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한가 잘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들은 극히 일부분의 과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대 자산화대상자들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일괄되게 100만원 30만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3~4년 전 보고서에도 미국 형태로 자산별로 다르게 정해야 된다는 예시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똑같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30만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자산유형에 따라서 100만원이 될 수도 있죠. 애매모호한 것이 교량이 도로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침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실사 지침에는 아침에도 들어가 있고 도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지자체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 교량 짓는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다리가 20년 전에 건설됐는데 다리 하나가 붕괴되면서 그 다음부터 대대적으로 유지보수비가 투입됐어요. 그런데 기록상에는 그것은 계상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건설됐을 당시에 금액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다 추적해서 구분해서 어느 것이 자본적 지출인지 구분해서 다 올려야 되는 얘기인데 그런 기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지침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예도 없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부채납자산 계상시 부채 계상하도록 여러분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인가 그 법을 보시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부채납자산을 공정가치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가공의 자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공유 자산 및 물품에 관한 법만 한번 보셨어도 저게 해결이 되는 건데 기타 등등 수없이 제가 여기에서 하루종일 떠들어도 많을 정도의 그런 과제들과, 저는 물론 다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누가 해결을 해주고 누가 그런 대답을 주지 않고 그냥 해라라고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각각 제각기 해오면 나중에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논문에서 재산은 현금주의이고 그 다음에 자산은 발생주의라고 개념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재산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라는 법을 보시면 발생주의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 함은 이렇게 돼 있고 공유재산의 범위가 저렇게 돼 있지만 우리 논문에서도 그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페이지로 된 것 4.1에 보면 공유재산도 있고 4.1.1에 보면 행정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재산에 보면 맨 끝에 공용재산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발생주의 항목이라고 아까 주장했던 그 내용인데요, 재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당황스러운 점은 물품 범위에 대한 겁니다. 여기 공무원으로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품이라는 건 소모품 다 포함합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여기에 “과연 물품은 모두 비유동자산인가?” 이렇게 써놨는데 비유동이 아니라 자장입니다. 소품 다 들어갑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교재인데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샘플로 가져 왔습니다. 여기에 물품의 분류와 유형에 보면 소모품이 있고 비소모품이 있어요. 비소모품은 차량, 전화기, 책상 이런 게 들어가고 소모품은 약품, 의류, 수선료, 재료, 탕약,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로 분류한 걸 보면 행정용품과 과학

용품이 있어요. 컴퓨터, 팩스, 사무용품, 철근, 강판, 시설자재 다 들어가고 저장품, 비 저장품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품을 그냥 유동자산이 아닌 것으로 전부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자료를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품은 종종 유동자산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에 보시면 가격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공유재산은 가격을 재조사해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자산이라는 것과 발생자의 자산과 또 공유재산법상에 나오는 재산과의 차이점 큰 것 중에 하나가 5년마다 가격을 그쪽은 재조정하고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취득 원가를 그 이후에 가격조정을 안는다는 것이 큰 거거든요. 2개가 다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난번에 마치 재무비율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전혀 비교대상이 안 되는 비율을 비교했던 논문과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서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과 재산의 차이가 과연 있는 것이냐, 여기 논문에서 제시한 기준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전부다 자산에만 포함되어 있느냐, 또는 재산과 재산의 인식시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가 있고요. 사례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발생주의 유형자산과 공유재산 물품까지 범위가 똑같은 거냐, 똑같은 범주에 놓고 비교를 한 것이냐, 그 다음 두 번째 비품과 차량운반구를 자산시설물에 포함했는데 그것은 물품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 실사가 아닌 재정보고서나 세입세출결산에 정부의 기준으로 계상하셨다 그러는데 2개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본 논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사례들을 봤을때 그 차액의 정확성이 과연 양쪽에 계량된 기준도 다르고 또 양 지자체가 어떤 상세하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총액만 놓고 차이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논문이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없이 현상만 그냥 발견한 겁니다. 현상이 이렇다라고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산의 실사가 과연 성공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 자산실사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부재로 인해서 지자체간 비교평가가 불가능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지자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대방 지자체보다 우리 지자체가 유리하게 평가받는 것은 좋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좋은데 우리 지자체의 성과를 잘 보이게 된 측면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 엄살떨 때는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보조금 많이 타는 근거가 되니까, 잘 생각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자체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시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기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대안은 무엇인가, 누가 해답을 줘야 됩니까? 누가 해답을 줘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강인재(사회자, 전북대 교수)

두 분 재정경제부에 조영욱 사무관님은 공인회계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화 선생님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 조영욱(재정경제부 사무관)

반갑습니다, 재정부 회계지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영욱 사무관입니다.

사실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토론으로 들어갔었는데 굳이 첫 번째로 바꾼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실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듣고 중앙정부도 곧 방안을 마련하고 실사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공부를 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이병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봐서는 중앙정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걸 받아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 보다는 자꾸 내용을 정리하다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뭐냐, 그래서 이게 토론이 아니라 제가 플로어에서 질문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쪽의 내용은 줄이도록 하고 이런 쪽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병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지방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앙쪽도 눈여겨 들을 대목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중앙은 출납폐쇄기간이라는 게 없고 그런 문제점 얘기하셨던 분들이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얘기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많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럼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실사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실사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사주체에 대한 의미가 없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다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회계법인이 도와주겠다라는 건지 그 둘간에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기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책임의 문제가 따릅니다. 저는 아까 이병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사결과를 평가하고 나중에 그런 절차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 까지는 일단 안 가더라도 그 숫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역시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에 그런 실사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따를 거고,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공무원들이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실사를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에 보면 회계법인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회계법인이 실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냥 보조자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실사에 있어서 평가역할을 전담해서 진행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역시 실사는 공무원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계법인은 일부 특수한 자산,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그런 금융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발생주의에 따른 계산을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만 정부의 용역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부의 실사에 있어서 회계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회계사들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대다수 철회를 해야 되는 거고 일부의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회계사들이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사지침이라는 걸 언급을 하셨는데 실사지침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방쪽의 실사지침은,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도 사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실사지침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작성중인데 실사지침을 만드셔서 직접 해보셨는데 실사지침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실사지침으로서 단계가 있더라, 그러면 실사지침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실사지침 이외 플러스의 어떤 행동적인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저희 중앙 측에서는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사지침만으로 이게 만능이나, 실사지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과 그런 문제점이 노출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쉬웠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개시재무제표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부채 실사를 한다. 2006년도에 회계처리는 계속 이루어진다. 그리고 2006년도 말에 재무제표가 확정이 된다. 그렇게 하면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는 게 그러면 2006년도에 취득한 자산은 실사를 하겠다라는 건지 2006년도에 취득한 자산은 실사를 안 하겠다라는 건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2005년도 말로 하면 2005년도 말에 있었던 자산이 있는데 처분이 되면 그 처분한 것을 가액에 대한 금액도 그렇고 처분손익을 어떻게 잡겠다든지 그것은 2007년도부터 하니까 묻히겠다라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2006년도 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 초에 실사를 한번 하든지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2008년도에 도입을 하는데 2008년도 도입하기 전에 2007년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한번 실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추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쪽에 많은 그런 용어들을 도입하게 되고 그런데 100% 도입이 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전적인 회계개정 정의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겁니다. 아까 이병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품에 있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이 될 수도 있고 충분히 회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얼마든지 학자적으로 논란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정부부처에서 과연 도입하면서 그런 것까지 구분을 하면서 실익이 있을지 그것은 제가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도입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표3에 기초자산에 실사방안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로 분류 했어요. 현행자료 활용실사, 서면조사, 자산미포함 세 가지 하셨는데 저는 암만 들여다봐도 현행자료 활용실사하고 서면조사하고 왜 구분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면조사한 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하셨고 미수채권 부분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서면조사라는 형태로 나왔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산미포함에서 제가 놀란 게 국유 재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국유재산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함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유, 점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그건 아니죠. 국유재산으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중앙정부하고 마찰의 소지가 있을 텐데 반드시 국유재산은 중앙정부에서 잡는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할 뿐이지 중앙정부의 자산은 국유자산으로 해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거고 기초단체에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저는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여기서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얘기했는데 중앙정부는 주민편의시설은 없으니까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대담하게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써냈는데 이게 과연 자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아주 그 공무원이 유능해서 20년 전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20년 전 취득가격으로 가고 무능해서 20년 전 취득가액을 안 가지고 있으면 변제공시기자로 가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할 것인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로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기반시설, 정부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항만, 다목적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30년짜리 만든 것을 대체평가방법으로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와서 공부를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제가 생각한 방향과 조금 틀린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여쭙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부칙으로 자산을 잡아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하고 나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이 제기된 거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각 지방자치단체나 행자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발표자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왔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는 원인분석이 분명히 되었을 텐데 여기서 발표를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숫

자만 받아놓고 그냥 이런 각오다라고 끝내신 것인지 여기서 발표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일 이 실사를 했을 때 기존에 발표하던 숫자하고 결산 보고된 숫자하고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특히 물품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물품이 빼돌린 걸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면제해줘야 실사가 제대로 되지 그런 것을 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대로 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공무원들이 따라올 것인지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과제가 말씀하시는 가격개정도 굉장히 문제이고 가격개정 부분이 정부에서 받아들일 거냐, 기업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언급이 안됐지만 접종재산은 행정 에 쓰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시가로 평가를 할 것이냐, 토지 같은 것을 행정재산하고 다르게 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지만 중앙정부에는 국방부의 재산이 있습니다. 재고자산들 부식, 피복 이런 것도 재고자산으로 들어갈 텐데 재고자산은 그럼 실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서 제가 그것은 들을 수 없지만 각종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숨겨진 재고자산들이 혹시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지침은 제가 나중에 한번 받아서 코멘트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재화(대전광역시)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에 이재화입니다. 저도 복식부기 시험사업이 벌써 만 7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3회 해서 만3년하고 한 달이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저희들 참여할 때만 해도 30명 정도 내외였는데 지금은 250개 단체가 전부 참여하다보니 20배가 넘는 600명이 넘어가고 또 관리하는 과장 및 국장까지 하면 자치단체 공무원이, 복식부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1천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하나하나가 전국에 1천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출하신 자료를 해명해드려야 하나

아니면 우리 실정을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병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산분류 같은 경우는 자료를 먼저 주셨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쇄본까지 그대로 나온 것을 보면 회계 기준위원회가 벌써 몇 번 열렸고 매뉴얼을 몇 번 바꾸고 했는데도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시는 회계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자료도 있고, 또 이 자료가 언제 자료냐 하면 2004년도 강남하고 부천시에 자산부채용역보고서의 최종보고서입니다. 그때 마침 교체를 만들면서 교체에다가 분류체계를 갈라놨는데 2006년도 4월 27일인데도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논의된 게 다 묻혀버리는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회계기준을 많이 연구하시고 하는 현 학회나 아니면 회계기준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복식부기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 또 컨설팅 하시는 컨설팅에 회계사님들 다 목소리가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하실 때는 그쪽 논리로 또 얘기하고 현장에 가서는 또 애매한 것은 매뉴얼 탓하고 기술 탓하다 보니까 지금은 재무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가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지 사실 법적 적용이 돼서 내놓으라고 하면 거기에 누가 검증해서 전문회계사분들이 참여해서 검증은 해주셨으면 검증할 만큼 하나하나 손떨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나온 대로 그대로 숫자만 확인하고 특별히 분류가 잘못된 것 몇 가지 검토하시지 실사부분까지 손 떨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놨다가 아까 조영욱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임성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 해서 실사할 때 기준이 틀리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있었던 공무원들 탓할 것이 아니라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 거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차이비용해소를 말씀하셨는데 차이비용해소는 어차피 복식부기하고 기존 회계 제도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산조사 해서 내놓기 바쁘는데 그 사람보고 또 먼저 제도를 분석해서 다시 이거하고 저거하고 차이를 또 내놓으라고 하면 어린애가 이제 일어났는데 뛰어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은 병행체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논리에 가서 구 회계제도가 병행해서 운영하다가 한꺼번에 갈 때 그때 논의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자산이 문제지만 사회간

접재산은 더 문제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현장은 도로지만 그 안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사해서 대체평가해서 내놓는다고 해도 사유지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을 다 면적까지 계산해서 내놓았을 때 나중에 제기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회계기준이 논의가 되면 하반기쯤 확정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제도를 각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사랑받지도 못한 제도를 운영하느라 굉장히 몸 달고 있습니다. 사실 복식부기제도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애뜻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바쁘게 당면업무에 밀리고 또 전담자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기대심리도 많이 있지만 전담자라고 하기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냥 나온 지침대로 그대로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사회기반시설 가액적용문제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회계기준부칙에 사회기반시설 몇 가지 조항만 유보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몇 가지 조항만 하지 말고 사회기반시설 조항 자체는 계속 업데이트 하되 2007년도 1월 1일 이후로 구축된 자산 같으면 계속 축적하되 기존자산인 사회기반시설 정도는 나중에 완성돼서 두 제도가 될 할 때 그때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영욱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하던 제도 감사원부터 그 사람 논리는 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논리는 기존제도는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규칙에서는 관점이 다 틀리니까 그 관리 관점대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다만 그 자료를 활용한 복식부기 담당했던 사람들이 대체평가 해서 금액이 얼마라고 내놨을 때 시범사업을 할 때 시범적용은 되지만 나중에 공시되고 확정되고 했을 때 그 책임성 문제는 복식부기 담당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소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강인재(사회자, 전북대 교수)

제가 보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사실 많이 논의된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제는 처음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넘겨서 써도 양해바랍니다. 플로어에서 제가 세 분 정도 현재 공무원도 좋고 학자분도 좋고 경험이나 의문점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플로어

지금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관련법은 제가 정확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원에 가서 회계실무과정을 교육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병철 교수님과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관여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이나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1차나 2차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4차 기간까지 가면서 계속 기준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1년 정도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번입니다. 그런데 재무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체평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기준에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야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조영욱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자산미포함에 대한 공유재산관련해서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위탁은 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일정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그런 것도 나중에 연결 재무제표 만들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항은 자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다보니까 재무제표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차츰 더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 강인재(사회자, 전북대 교수)

고맙습니다. 다른 분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플로어

저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얼핏 생각이 나서 코멘트하고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파악하실 때 아까 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는 정부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기업을 보면 공기업에 도로나 항만에 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실사를 할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다.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 관리

는 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상관리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사를 하실 때 그런 중복된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 강인재(사회자, 전북대 교수)

한 분만 더 들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이병철 교수님께서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셔서, 대략 이 정도로 하시고 지금 사실은 전중열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성질이 있고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논문 보고 느낀 게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이 많이 됐고 또 정책쪽 제도적인 문제점도 많이 됐는데 사실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행자부에서 이런 엄청난 재산 실사가 다른 선진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달랑 아까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자산실사가 아니라 그 매뉴얼을 달랑 주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 얼마정도의 비용이 투입돼서 하는 건지 저는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자산실사에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거라고 해서 예산을 잡도록 그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책임져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 전중열 교수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중열(서울산업대 교수)

3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자산분류 오류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격결정개정에 관련돼서 이 부분은 법에 관련된 문제하고 걸리기 때문에 지방회계기준에서 정한 취득원가주의하고 자산에 대한 재평가문제가 아까 얘기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돼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가 오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자신도 사실은 실무쪽에서는 잘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김현 회계사님이 코멘트하신 그런 위주로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상당히 느낀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혁 교수님도 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몇 분도 전부 위원으로 계시는데 실제 실사에 관련된 부분에 직접 아마 회계기준 위원들이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계기준이라는 게 어떤 실무차원에서 보다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 실무쪽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강인재 교수님도 업무처리매뉴얼 하나만 가지고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실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많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얘기를 드렸지만 오히려 또 이런 많은 풍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면에 대해서 저 자신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강인재(사회자, 전북대 교수)

세 분 토론자에게 특별히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병철(경기대 교수)

몇 가지 도움이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언뜻 자산이냐 아니냐 판단기준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점유하고 있다 뭐다 전부 필요없는 거고요, 등기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큼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정의에 왜 쓸데없는 사족이 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소유권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납폐쇄기간은 사실상 전산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던 건데 단순한 전산문제였는데 그게 기준에 적용이 돼서 완전히 기준자체가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계제도 심의위원들이 좀 더 실무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하시고 전산도 좀 스터디 좀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한 기준내용을 개성화시킬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시간을 갖고 스터디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260개가 넘는 지자체가 기준 하나가 변경되면 그것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코스트는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지침내용 실사지침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침하고 또 행자부에서 나온 개정 과목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문제제기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개정과목 표에 보면 가지급금 같은 것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산재무제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개정과목 분류표에 있으니까 그냥 그게 묻혀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공무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운영보고서와 과거에 성질별로 돼 있다 기능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별 운영보고서는 뒤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세한 내용, 예를 들어 옛날에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있던 항목들이 지금 개념정리가 다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자체 입장에서 유리하게 조립해서 편집해서 임의로 내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어떻게 편집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를 사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조영욱(재정경제부 사무관)

아까 질문하셨던 것 제가 답변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산재평가하는 것 중앙정부는 5년마다 가격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차 지금도 국회나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개정을 한 금액, 그러니까 두 법관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법관의 발생규정이 좀 서로 틀립니다. 한쪽 법에서는 가격개정을 하라고 해놓고 구 예산 결산에 넣으라고 해놓고 또 한쪽 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게 해서 가격개정을 전혀 못하게 해놓고 두 법관에 서로 상충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물론 가격개정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데 제가 다 언급하는 것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개정이 제일 먼저 부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가격개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데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정부회계는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부회계는 가격 개정한 금액을 반영하는 게 옳습니다. 굳이 이중장부를 가져와서 정부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부의 자산금액을 가장 최대한 시가에 가까운 쪽으로 5년마다 개정을 하자. 그게 저희 취지이고, 더 나간다면 매년 가격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힘들겠지만 차라리 피하지 못하면 아예 매년 가격개정을 해버리는 쪽으로, 그렇다면 조금 일반 유가증권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기업처럼 손익의 조정목적이 덜하기 때문에 법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무방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위탁하는데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내부 거래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회계하고 지방자치단체회계하고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합친 전체를....

## ● 플로어

합친 부분이 아니라 예수금과 위탁금 그런 부분에 수수료를 받으면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 조영욱(재정경제부 사무관)

그건 그냥 수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부거래가 나오는 그런 절차는 법적으로 검토가 돼 있지 않고요. 물론 매뉴얼에 따라서 정부재정 통계를 낼 때는 내부거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때는 내부거래로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이 도로항만 같은 게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민간에서 관리를 한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반영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있으니까 일단 정부쪽에 자산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대신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도로에 난 수익이 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측에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회계기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관리가 그 동안 잘돼 왔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그걸 만들었으면 2~30년 전에 만들어진 소양강댐이 얼마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행히 수자원공사라는 데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복잡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좋은 정부의 절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실사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실제로 실사를 하신 분들이 예산이 필요했는지 예산이 들어왔으면 어떤 부분이 들어왔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볼 때는 들어갈 예산이 별로 없어요. 물론 다니면서 측량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데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하는 외부 용역업체측에 줄 예산이 필요한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오늘 공부하려고 왔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향후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사가 성공하려면 물론 회계법인이나 학자님들도 많이 필요하시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관심하고 교육입니다. 제가 다른 할일도 바쁜데 이거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공무원들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과장이 그거 하라는데 해” 그러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무원 자체 분위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강압적인 것만 할 수 없지만 저도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쨌든 입체적으로 위에서 그리고 옆에서 그런 실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 조성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재화(대전광역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도 해보지 않은 시범사업을 만 7년째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산실사 같은 경우도 어떤 기관에서는 용역별로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치단체가 자산실사에 대해서 전혀 예산 안 갖고 현장인력하고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인식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생태라고 할까요 표현이 그렇지만 법령이 공포되면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자치단체 총 동원해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법령이 자꾸 도래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3년 이상 했으면서도 이걸

공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때는 두렵지 않고 공직자들이 복식부기라면 사랑받고 하는, 복식부기 업무 좀 해보고 싶다 하게끔 애정을 갖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 ● 플로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복식부기 1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뭐가 잡힐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굉장히 섭섭하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실정이 어떠냐면 고위 공무원분들께서도 복식부기 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재산조사를 하는데 땡벌에서 나뭇잎 따다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런 정도이고 자산실사를 하다가 아파가지고 ...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감사원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이재화 선생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고 지침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 얘기를 하시려면 저는 감사원 아니라 어떤 감사라도 이걸 불합리한 거죠. 감사원을 따지기보다 지침부터 정확히 만들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 김 혁(성균관대 교수)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혁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제가 옆에서 잘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답변을 행정자치부에 정 사무관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서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실사부분은 행정자치부의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그 부분에서 지침도 마련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그것이 회계적인 기준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백업하고 연구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아직 정식 도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꽤 있었

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는 많은 불평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더 듣고 싶었지만 2~3분밖에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침대로 해봤더니 뭔가 잘 안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빨리 저희가 고쳐드릴 것이고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가봤더니 거기도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이 처음에 기초자산을 실사하는 문제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회기반시설 같은 거 어려운 부분을 한꺼번에 다 못하면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 자체가 지금 운영보고서에 들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자산 픽업했으면 나중에 순자산으로만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하지 않고 영 안 되면 그런 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 대차대조표 재정상태보고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칙 같은 것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한다거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복식부기를 새로 도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강인재(사회자, 전북대 교수)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기업회계기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모든 기업이 표준화된 어떤 기준 가지고 잘 했을 것인가, 또 그 당시 어떤 우리 실정에 맞는 정확한 기업회계 기준을 자산실사를 포함해서 했을 것인가, 아마 시간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학술을 통해서 신 회장님께서 6월달에 워크숍 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 때 실제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중열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세 분 토론자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